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2012-01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가이드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특허심판원





Contents

1. 제도의 의의	02
2.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제도 도입	02
3.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제도 도입의 취지	02
4. 직권보정 관련 특허법 및 타법에서의 규정	03
5.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제도 규정 내용	04
6.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범위 및 시기	07
7.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제도 운영 절차	09
부 록	14

01

제도의 의의

- 『심판청구서 직권보정』이란 심판청구서에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요구서 등을 발송하지 않고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는 제도이다.

02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제도 도입

-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023. 9. 공포되었고, 관련된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반이 2024. 3. 마련되었다.
-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제도는 특허법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 3. 15. 시행되었다.

* 특허법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실용신안법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상표법 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는 동일한 내용이며, 이하 '특허법 제141조'가 4개 법을 대표한다.

03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제도 도입의 취지

- 구(舊) 「특허법」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었다.
- 하지만, 도입된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제도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정명령이 불필요하여 출원인의 편의가 도모되고 심판 절차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1) 구(舊) 특허법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04

직권보정 관련 특허법 및 타법에서의 규정

-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명백한 오탈자, 참조 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오탈자 외에도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기재불비 사항도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 심사관이 직권보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66조의2).
-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에게 경미한 사항은 직권보정사항을 통지하는 ‘심판청구의 직권보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분	조문내용(조항)
특허 심사	● 특허심사관의 직권보정 관련 입법례 - 특허법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② ④ (생략) ① 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③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직권보정이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행정 소송	●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이 되는 행정심판청구 관련 입법례 - 행정심판법 제32조(보정) ① (생략)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4조(심판청구의 보정) ②~⑤ (생략)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하였을 때에는 보정한 사항, 보정한 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심판청구서의 보정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 가능하도록 특허법 제141조제①항, 상표법 제12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직권보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절차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④항 내지 제⑦항에 마련*하였다.

* 당사자가 직권보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제141조 제4항 내지 제6항 신설)하고, 심판장의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제141조 제7항 신설)

▶ [특허법]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 나.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특허법 시행규칙]

제41조(의견서) 거절이유 등 통지, **직권보정 사항**, 심판사건, 이의신청, 취소신청사건,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 자진보정 또는 기타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66조의2제3항 및 **제141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상표법]

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서가 제12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26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 나.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5조제2항 또는 제12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상표법 시행규칙]

제61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① 심판장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27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서가 제126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127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 나.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6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조의3(심판청구서의 직권보정) ① 심판장은 특허법 제141조제1항(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하려면 직권보정통지서(별지 제42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심판장은 청구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는 직권보정을 하고, 의견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인**하여 직권보정을 하여야 한다.
- ④ 특허법 제141조제1항(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장은 **직권보정취소통지서(별지 제4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취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06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범위 및 시기

- 📖 직권보정의 범위는 심판청구서의 서지사항(당사자, 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지정상품(상표)의 명백한 오기재 등이다.
- 📖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등 공부상의 기재에 비추어 청구인/권리자 성명, 출원번호/권리번호 표시 등의 **오기가 명백한 경우로 요지변경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한해** 직권으로 보정가능
- 📖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서지사항으로부터 청구인의 당초 의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직권보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시적 사례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의 사건의 표시에 ‘특허번호 10-1234567’, 피청구인(특허권자)에 ‘김연아’라고 기재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번호 10-1234567의 특허등록원부상 특허권자는 ‘김연아’인 경우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의 사건의 표시에 ‘특허번호 10-1234566’을 기재했으나, 청구이유와 증거로 첨부한 특허등록공보 등 심판청구의 다른 부분에서는 모두 ‘특허번호 10-1234567’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



[참고] 기존 보정요구 사항

공통 특허법 제140조, 상표법 제125조, 디자인보호법 제127조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특허

1.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실시하려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 연월일
 -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2. (정정심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
3.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일 및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특허거절결정일,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상표 상표법 제125조, 제126조

1.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
2.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일 및 출원번호,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
 - 심사관의 거절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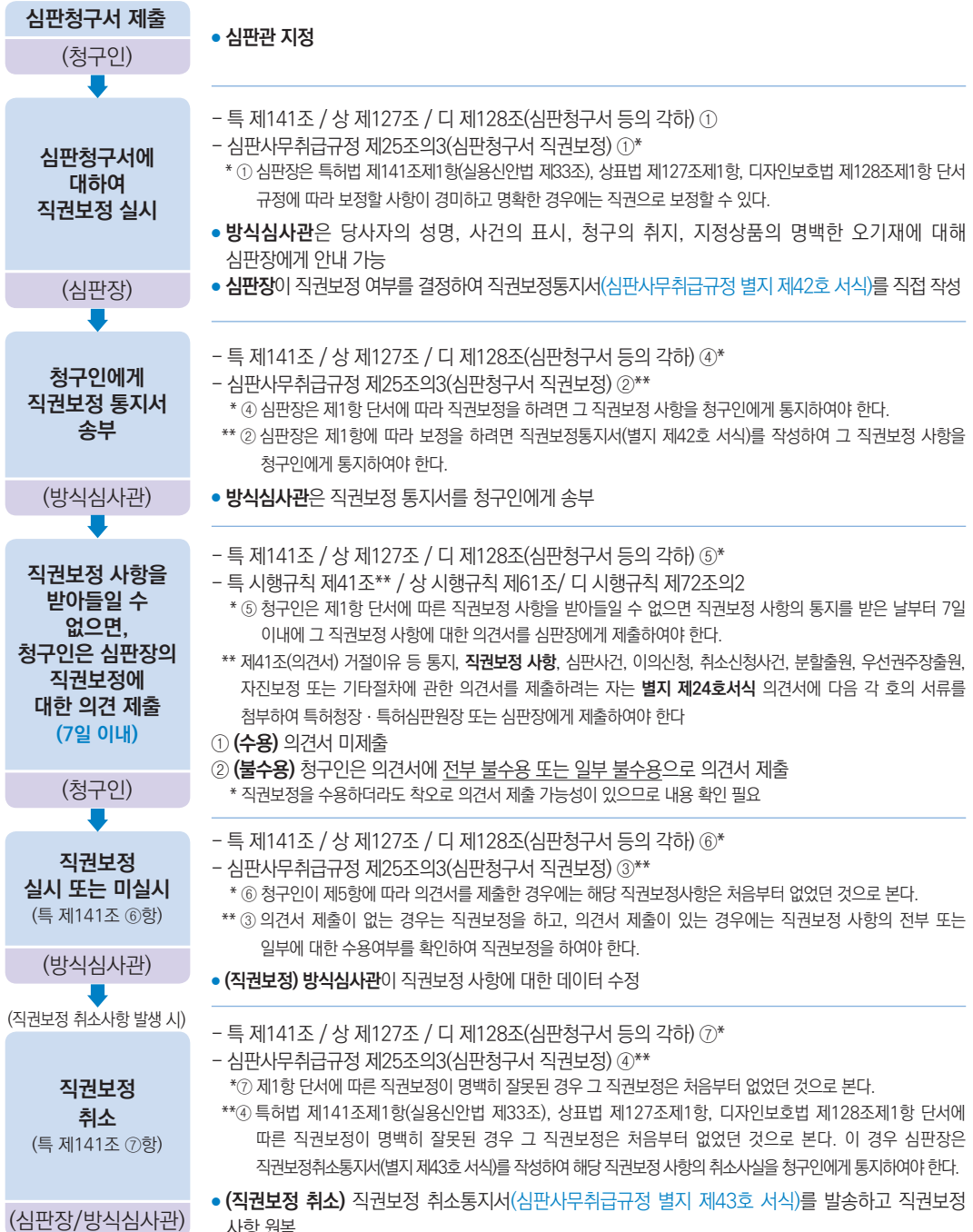
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직권보정의 시기**는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 지정 후 가능하며, **예고등록의뢰 및 심판청구서부분송달 전까지 직권보정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심판장이 심리 중에도 직권보정 또는 직권보정 취소가 가능하다.

07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제도 운영 절차



(1) 심판정책과의 방식심사관은 당사자 성명, 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지정상품의 명백한 오기재에 대해 심판장에게 안내할 수 있다.

심판장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직권보정 여부를 결정하여 직권보정통지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첨부 1 참조)를 작성한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조의3②항)

직권보정 통지서를 작성할 때는 보정위치, 보정 전/후에 직권으로 보정되는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청구인이 직권보정의 수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예시] 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42호 서식의 직권보정 사항 기재란

심판장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1) 보정위치, 보정 전/후에 직권으로 보정되는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1. 이 사건 20 . . . 자 심판청구서는 특허법 제141조제1항(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1항 단서 규정,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직권보정 사항]

번호	보정 항목	보정 위치	보정 전 내용	보정 사유
			보정 후 내용	
1	심판 청구서	청구의 취지	상표등록 40-0321911-0000 의 지정상품 중 제25류 "양 말 "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단순 오기
			상표등록 40-0321911-0000 의 지정상품 중 제25류 "양 말 "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2	심판 청구서	증거 방법	1. 갑 제1호 증 본건 상표 등록원부 1. 갑 제3호 증 상표등록출원서	단순 오기
			1. 갑 제1호 증 본건 상표 등록원부 1. 갑 제2호 증 상표등록출원서	

2)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제출일자를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 이내로 전산에서 자동 설정

발송번호 :

발송일자 : 2000.00.00

제출기일 : 2000.00.00

2. 청구인은 심판장의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상기 제출기일**까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보정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41조/상표법 제127조/디자인보호법 제128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조의3)

(2) 청구인은 심판장이 직권보정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때는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3 참조)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41조⑤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41조)

📌 청구인은 심판장의 직권보정 통지에 대하여 **직권보정 사항별로 전부 또는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불수용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작성 요령

청구인은 심판장이 통지한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 1) 【서류구분】에서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체크하고,
- 2)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란을 작성한다.
- 3) 심판청구 직권보정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별지 제24호 서식 의견서 제출할 때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불필요**하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1조)

6.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란

가. 【제출구분】란의 선택사항 중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 난을 작성합니다.

나.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선택하여 다음 예와 같이 ☐ 안에 표시(예: ☒)합니다. 이 경우 의견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한 것 외에 별도로 다른 표시를 하거나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전부 불수용 ☐ 일부 불수용

다.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불수용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그리고,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란의 다음 행에 【일부 불수용의 표시】란을 만든 후 직권보정 사항에 관한 번호들 중 받아들일 수 없는 해당 번호를 ()안에 적습니다.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번호만을 적어야 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직권보정 사항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일부 불수용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의견 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한 것 외에 별도로 다른 표시를 하거나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직권보정 사항에 관한 번호들 중 1번과 3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때의 기재례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전부 불수용 ☒ 일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1)번 사항)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3)번 사항)

(3)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방식심사관은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테이터를 수정한다. 단, 청구인의 수취방법이 ‘서류’일 경우, 2일* 더 기다린 후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테이터를 수정한다.

* 특허법 제141조제⑤항이 ‘청구인은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류로 수취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이 늦어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

(4) 청구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수용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방식심사관은 청구인이 수용하는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테이터를 수정한다.

이때, 당초 직권보정사항 중에서 청구인이 의견서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한 직권보정사항은 다시 직권보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5) 특허법 제141조/상표법 제127조/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141조제7항/상표법 제127조제7항/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7항].

* 청구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수용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방식심사관이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잘못 수정한 경우 등

- 이 경우 심판장은 직권보정취소통지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43호 서식, 첨부 2 참조)를 작성하여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취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조의3제4항).



[예시] 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43호 서식의 직권보정취소 통지

- 1) 심판장은 명백히 잘못된 직권보정사항을 확인하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이 사건 20 . . .자로 송부된 직권보정통지서는 청구인의 20 . . .자 의견서 제출에 따라 직권보정 사항 중 00에 대하여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부 록



01

직권보정통지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직권보정통지서<개정 2024.5.15.>

발송번호:

발송일자: 2000.00.00

제출기일: 2000.00.00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직권보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이 사건 20 . . . 자 심판청구서는 특허법 제141조제1항(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1항 단서 규정,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직권보정 사항]

번호	보정 항목	보정 위치	보정 전 내용	보정 사유
			보정 후 내용	
1	심판 청구서	청구의 취지	상표등록 40-0321911-0000 의 지정상품 중 제25류 "양 막 "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단순 오기

			상표등록 40-0321911-0000 의 지정상품 중 제25류 "양말"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2	심판 청구서	증거 방법	1. 갑 제1호 증 본건 상표 등록원부 1. 갑 제3호 증 상표등록출원서	단순 오기
			1. 갑 제1호 증 본건 상표 등록원부 1. 갑 제2호 증 상표등록출원서	

2. 청구인은 심판장의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상기 제출기일까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보정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41조/상표법 제127조/디자인보호법 제128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조의3)

심 판 장

02

직권보정취소통지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43호 서식]

[별지 제43호 서식] 직권보정취소통지서<개정 2024.5.15.>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직권보정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이 사건 20 . . .자로 송부된 직권보정통지서는 청구인의 20 . . .자 의견서 제출에 따라
통지한 직권보정 사항 중 (?)번 사항에 대하여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41조제6항/상표법 제127조제6항/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6항,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조의3제4항)

심 판 장

03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4. 3. 15.>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서 · 답변서 · 소명서

- [서류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심판사건답변 ☐ 심판사건의견
☐ 이의답변 ☐ 이의신청의견
☐ 이의신청재답변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 취소신청사건의견 ☐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 ☐ 기타의견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전부 불수용 ☐ 일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번 사항)

【의견(답변, 소명)내용】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 기재요령 제9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3. 15.>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답변서, 소명서)

- [서류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심판사건답변 ☐ 심판사건의견
☐ 이의답변 ☐ 이의신청의견
☐ 이의신청재답변 ☐ 반력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전부 불수용 ☐ 일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번 사항〕

【의견(답변, 소명)내용】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3. 15.>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답변, 소명)서

- [서류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 재심사청구에 따른 의견 ☐ 심판사건 답변
☐ 심판사건 의견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의견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재답변
☐ 반력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심판번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전부 불수용 ☐ 일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의 표시】 직권보정 사항 중 ()번 사항)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의견(답변, 소명)내용】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8호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가이드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특허심판원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www.kipo.go.kr/ipt/

ISBN : 979-11-6884-203-8 13500
DOI : 10.8080/P9791168842038